



영국의 공증인제도와 관련 규범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I. 서설

영국의 공증인제도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발달되었으며,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많은 공증서류가 필요하였고, 공증서류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공증업무에 대한 관심이 영국 내에서 많아졌다. 이에 따라서 공증인제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율이 요구되었으며, 다양한 규범이 제정되었다.

영국 내에서도 대륙법계 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다른 공증인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현재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공증인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공증인제도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규범이 제정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잉글랜드의 공증인 자격에 관한 규제와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에서의 공증인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II.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공증인제도 개관

영국 성공회를 세운 헨리 8세에 의한 개혁에 따라서 잉글랜드는 1533년부터 모든 공증인이 Court of Faculties에 의해 임명되었다. Court of Faculties는 영국 성공회의 대표인 캔터베리 주교청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공증인이 있다. 잉글랜드의 공증인 업무는 주로 솔리시터(solicitor: 주로 서류업무와 하급심의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바리스터(barrister: 주로 상급심의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대표되는 변호사들과 기타 공증인으로 승인받은 자들이 할 수 있다. 1999년까지는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시티(City of London)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활동하는 자격을 가진 특별한 공증인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Scrivener's Company라는 곳에 등록된 Scrivener 공증인(Scrivener Notaries)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독점적

인 공증업무를 하였다. 이들은 솔리시터 변호사 자격을 가질 것이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와 외국법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공증인들은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솔리시터 또는 바리스터의 자격을 가지거나 법학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2년제의 공증실무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솔리시터 공증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변호사 실무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Scrivener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와 외국법을 공부하고, 2년의 Scrivener 실무공증인 아래에서 수습과정을 통해 경력을 쌓을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잉글랜드에서는 영국 성공회와 관련된 한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종교적 공증인(ecclesiastical notaries) 제도도 있는데, 특정한 경우 법률적 지식이 있고 성공회 주교의 승인을 얻은 비법조인(솔리시터나 바리스터가 아닌 자)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증인에 관한 규정은 1990년에 제정된 법원및법률서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57조에 의하여 새롭게 정비되었다. 현재 공증인들의 자격관리는 Master of the Faculties가 담당하며, 공증인 조직으로는 Notaries Society¹⁾가 있다.

Ⅲ. 1990년 법원 및 법률서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57조의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증인의 자격은 1990년 법원및법률서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의 제57조(Section 57)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법에 따라 이전까지 공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적용되어 오던 다양하고 복잡한 법규들이 통일되었으며, 이 법의 기본적 규범 아래에서 보다 세부적인 법령들이 마련되었다. Section 5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더 이상 공증인은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의 특정지역에서만 업무하도록 임명되지 않는다.
- (2) 공증인으로서 임명되기 전 일반적으로 요구되던 특정한 수습기간을 거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 (3) 이에 따라 다음의 일련의 공증인에 관련된 조치들은 효력을 잃는다.



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notariessociety.org.uk>를 참고할 것.

- (a) [1801 c. 79.] 공증인법 1801의 제2조(7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자도 공증인으로서 인정받지 않도록 함)
- (b) [1833 c. 70.] 공증인법 1833의 제1조(City of London과 Royal Exchange로부터 10마일에서 수습하도록 제한)
- (c) 공증인법 1833의 제2조(잉글랜드 특정지역에서 업무하도록 공증인을 임명)
- (d) [1843 c. 90.] 공증인법 1843의 제3조(수습기간을 5년으로 단축)
- (e) [1914 c. 91.] 웨일스교회법 1914의 제37조(웨일스 특정지역에서 업무하도록 공증인을 임명)
- (f) [1969 c. 58.] 사법운영에 관한 법 1969의 제29조(런던에서 공증인의 수습기간 단축)

(4) 규정에 의해 Master는 다음의 조항을 만들 수 있다.

- (a) 특정인이 공증인으로서 허가를 인정받기 전에 만족시켜야만 하는 자질
- (b) 공증인이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교육
- (c) 공증인의 실무, 행위 그리고 교육을 규제하는 것
- (d) 8항과 9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을 보충하는 것
- (e) 공증인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유지함에 관한 것
- (f) 공증인이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내용
- (g) 공증인 때문에 발생한 민사책임에 대한 청구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공증인이 배상하는 것
- (h) 공증인 또는 그들의 고용인들 중의 부정으로 그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불해야 할 보상에 관한 것
- (i) 다음에 언급할 특별한 요금을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바 있는 그런 상황과 합리적인 요금에 있어서 지불을 요구하는 것
 - (i) 자격의 수여
 - (ii) 최고법원에 의한 실무자격증의 발급
 - (iii) [1974 c. 47.] 법무관법 1974에 의하여 발급하는 실무자격증의 발행처에의 입장

(5) 이 법에 의해 1833법의 제2조와 1914법의 제37조의 폐지는 두 조항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 어떠한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Master는 폐지조항들의 결과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6) 특히, 5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은 이 조항의 시행 바로 전인 공증인법(웨일스 지역) 1924이 적용된 공증인을 위해 The Crown in Chancery의 서기관에 의해 그에게 인정된 특허를 대신하여 새로운 특허장이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 (7) 4항 내지 6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 (a) 명령을 제정하기 위한 Master의 권한
 - (b) Master로부터 제정된 규칙
- (8) 시행일(operative date)의 발효와 더불어 지역 공증인으로서의 어떠한 제한도 그 해당 지역의 실무에 종사하는 기간 내에는 그 적용이 정지되어야 한다.
- (9)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ster’는 Faculty의 장을 의미한다.

‘operative date’는 (1)이 발효되는 날 또는 관련 공증인이 지역 공증인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때(면허취득일로부터 5년 이하인 경우)

(1)조의 시행 후 Master가 이 조항의 목적에 대해 정함으로써 전보다 더 빨라진 날짜

‘prescribed’는 이 조로부터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qualifying district notary’는 Act 1833의 (2) 또는 Act 1914의 37조에 따라 공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소한 5년 동안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Ecclesiastical Licences Act 1533은 공증인에게 수여된 어떠한 허가도 관련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IV. Notaries(Qualification) Rules 1998

1990년 법원및법률서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이 기존의 공증인 관련 법규들을 조화시키고 통일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면, 구체적인 공증인 자격의 규율에 관한 규범은 1998년 제정된 공증인(자격) 규칙(Notaries (Qualification) Rules 1998)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규칙은 공증인 자격을 규율하는 Faculty Office of Archbishop of Canterbury와 이를 지

휘하는 Master of the Faculties에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²⁾ 본 규칙은 EU(European Union)와 EFTA(European Free Trade Area)로부터 공증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

공증인 자격에 관한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1세 이상의 연령
2. EU 및 EFTA 등 공증인에 대한 예외
3. 자격부여를 위한 학습과목

특히 자격부여를 위한 주요 학습과목은 헌법/행정법, 국제사법, 재산법, 계약법, EU법, 로마법/시민법, 형평법, 기업법(상법), 유언집행, 공증실무 등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솔리시터와 바리스터 자격을 획득한 자, 영국 내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자 및 CPE/LPC 과정 수료자는 로마법과 시민법, 국제사법, 공증실무 등을 제외한 과목들의 학습이 면제된다. 또한 변호사 자격 취득이 5년 이상된 자가 실무에 있는 경우 모든 과목의 학습이 면제된다.

이와 같은 실무교육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증실무학위과정(Postgraduate Diploma in Notarial Practice)’이라는 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³⁾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facultyoffice.org.uk를 참고할 것.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cont-ed.cam.ac.uk/LegalStud/Notarial을 참고할 것.

V. Scrivener Notaries에 대한 관리와 규제

Scrivener notary는 Scrivener(Qualification) Rules가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Scrivener's Company에 등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특수한 공증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런던의 금융·무역·상업의 중심지인 City of London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공증인이며, 이들을 위한 협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공증인들 중에서 외국법과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여 Scrivener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VI. 스코틀랜드의 공증인제도

스코틀랜드의 공증인제도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스코틀랜드의 공증인 제도는 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스코틀랜드의 Court of Session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는다.

스코틀랜드의 공증인은 모두 변호사이지만, 변호사 규정과 공증인 규정은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존재하며 규제도 다르다. 스코틀랜드의 공증인 규범은 1990년에 제정된 Law Reform (Scotland) Act에 의하며, 공증인 관리는 Council of the Law Society of Scotland가 담당한다.

VII. 결 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공증인 제도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규제 및 관련 규범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랜 역사에 기인한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이 EU 소속국이라는 특수성도 공증인 규제에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공증인의 자격은 대부분 법무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인 솔리시터가 취득하지만,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공증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증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는 해당자가 공증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정도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공증인 자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영국에서의 공증인 관련 규율과 규범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연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 봉 철

(외국법제조사위원)